

# 『구미시설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## 2. 제안이유

-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(2010.3.22.)제정 및 「지방공기업 설립·운영기준」(2012.9.10.)개정에 따른 비상임감사 임명기준에 관한 사항 및 이사회 운영기준을 보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「지방공기업 설립·운영기준」에 의거 구미시설공단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 감사를 둘 수 있는 단서조항 신설(안 제10조제1항)
- 안 제10조제1항 단서 신설에 따라 시 감사담당관을 당연직 비상임 감사로 규정한 관련 항 삭제(안 제10조제4항)
-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회의참석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조항 신설(안 제15조제6항)

## 4. 참고사항

-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8조, 「지방공기업 설립·운영기준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정 및 「지방공기업 설립·운영기준」 개정에 따른 비상임감사 임명기준에 관한 사항 및 이사회 운영 기준을 보완코자하는 조례임.

### ○ 주요 내용으로는

- 「지방공기업 설립·운영기준」에 의거 구미시설공단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 감사를 둘 수 있는 단서조항 신설(안 제10조제1항)
- 시 감사담당관을 당연직 비상임 감사로 규정한 관련 항 삭제(안 제10조제4항)
-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회의 참석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조항 신설(안 제15조제6항)

### ○ 검토결과

본 조례안은

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정 및 「지방공기업 설립·운영 기준」의 개정으로 인해 시 감사관이 공단의 감사를 겸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, 구미시설공단 비상임 감사의 임명을 “구미시설공단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 감사를 둘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”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,

이는 지방공기업에 전문성을 갖춘 감사를 임명함으로써 감사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시설공단의 설립목적인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통한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